

〈書 評〉

鈴木敬夫 著 『法을 통한 朝鮮植民支配에
관한 研究』

日帝時期 法制史연구의 새로운 轉機

金 度 均*

1. 우리는 일본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그 동안 산출해왔던 일본제 국주의의 조선지배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분석에 익숙해있기하지만, 일본의 법학자로부터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대단히 드물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볼때 鈴木敬夫교수의 연구는 식민지시대사연구에 일본학자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기여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제식민지통치의 법적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비단 일본학자들에게만 지적되어야할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근대역사학과와 특히 법사학과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간 몇몇 단편적인 연구가 제출되어 왔지만 특정한 법분야에 국한되거나 서론적이고 문제점의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즉 일제의 치안·통제·同化立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실증적이고도 입체적인 연구는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鈴木교수의 연구는 日帝時代의 法史에 대한 본격적인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鈴木교수는 무수히 많은 일제시대의 법령 등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植民地立法政策을 비롯한 帝國主義官僚, 學界 내부에서의 논의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사의 흐름과 이들을 연

*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아주대 강사

관지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있다. 방대한 자료와 博學의 驅使에 있어서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행정적·정책적 측면을 심도있게 다룬 姜東鎭의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한길사, 1985)와 함께 이 분야를 대표하는 저서로 손꼽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연구는 라드부르흐(G. Radbruch)의 법철학적 명제를 식민지 조선의 법제를 분석하는 데 원용함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위한 법철학적 근거의 하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 즉 저자는 「實定法の 不法」 즉 惡法인 日帝의 조선식민지統治法을 조선민족의 「인간존엄」과 「민족정신」, 「정신적 자유의 해방」이라는 「實定法을 초월하는 法」(übergesetzliches Recht)에 입각해서 「犯罪」로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P.3) 따라서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으로부터 저자가 구한 것이 단순한 학문적 패러다임 이상의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요컨대 이 연구는 확고한 철학적 세계관과 지식인의 이론적 실천을 결합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와 같은 면모는 일본의 대표적 라드부르흐 연구자이면서 일제의 식민교육·징병제 등을 예찬했던 尾高朝雄의 사이비 지식인적 작태와 뚜렷이 대비됨으로써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pp. 175~176)

2. 이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개괄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일본민족에 의한 植民地統治法の 成立過程과 그 惡法的 性格을 史實에 따라 實證的으로 검토하여 「法을 통한 植民地支配」의 實態를 概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 보여주듯이 이 저서는 일제의 조선통치법의 중요한 많은 法습들을 철저히 추적하고 全文을 소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연구가 다루는 영역은 조선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억압적 지배의 법부문과 천황제사상의 주입 및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법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를 각종 治安法영역으로, 후자를 教育法에 의한 民族精神의 改造와 皇民化政策으로

나누어서 저자는 고찰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日本本國의 法政策 및 法規, 당시 法學者들의 해석 등과의 연관 속에서 조선식민지법을 다룬다는 점이다. 즉, 조선에서의 각종 입법이 일본 국내의 법정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명되어, 그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저자의 말을 빌면, “제국주의적 식민지통치는 바로 자본주의적 통치(P.4)”이며, 단지 외국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여 식민지法制의 비정상적(irregular) 측면만을 감상적으로 비난하는 연구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론 鈴木교수는 ‘자본주의적 통치로서의 日帝의 식민지통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法制를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고찰을 못했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제 1 장에서는 저자는 韓日合併에 이르기까지의 條約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본국내의 治安立法政策이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을 밝혀주고 있어, 각종 韓日協約의 法社會學的 측면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헌법학자들의 헌법해석논리를 제시해주는 부분도 <법을 통한 식민지 지배>를 더욱 구체적인 연구 수준으로까지 높이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각종 治安法—保安規則, 新聞紙法, 保安法, 警察犯處罰令, 出版法, 集會取締, 犯罪即決令, 朝鮮答刑令 등—의 全文과 문제되는 조문들을 당시 현실과 관련해서 고찰하고 있다. 우선 그 全文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자료적 가치를 더해 주고, 나아가서 각종 治安法을 日本治安立法과 대비시키면서 분석해 주고 있어서 입체적인 성격까지 더하고 있다.

제 3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거나 범조문의 나열에 그치기 쉬운 교육법을 일제의 침략정책과 연관지워 분석하여 당시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교육단위—심지어 書堂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교육입법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사회적 효과, 그것에 대한 저항들을 그려내줌으로써 오늘날의 교육입법과 교육정책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민족정신의 말살과 더불어 그것을 수행하는 全體主義 및 天皇制 이데올로기가 조선 사

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뻗어간 그물망을 형성하는 메카니즘이 제 3 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은 ‘治安維持法’에 의한 탄압을 일본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업적들을 소화하여 이를 조선에서의 治安維持法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治安維持法の 시기별 변화, 기타 주요한 治安立法들—暴力行爲處罰에 關한 法律들, 思想犯保護觀察法, 不穩文書臨時取締法 및 朝鮮不穩文書取締令, 軍機保護法, 國防保安法,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朝鮮戰時刑事特別令, 裁判所戰時特例 등—의 목적, 기능, 효과들을 그 구체적인 立法背景, 條文, 適用節次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 파쇼적 治安政治의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

3.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식민지조선에서의 행정과 법제가 가지는 폭력적, 억압적, 착취적, 불법적 성격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점은 鈴木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가 비뚤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이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저자의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 게다가 저자의 식민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법사회학적 연구보다는 규범학적, 법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식민지법을 분석하였으므로 앞에서 지적한 성격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굳이 지적한다면 이와 같은 법의 탄압적 속성 즉,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서의 법, 日帝침략자의 주관적 의도의 不法性を 강조하는 도구주의적 분석을 넘어서서 구조적 분석으로 까지 나아가는 것이 日帝시대의 法史연구에 남겨진 과제라는 것이다. 鈴木교수도 인정하듯이, 경제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法の 객관적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 진정하게 日帝時代의 法制的 전모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9, 398 면)